

**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**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계산을  
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 
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 
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 
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 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 
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**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 
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·파  
생재간접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주식·파생재간접형  
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0.02.17 - 2011.02.16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 
유진투자증권, 우리투자증권, SK증권,  
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

**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**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.05.10	제2조 (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)	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
제41조(이익분배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. 1. 지급기준일 : 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2. ~ 3.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. 1. 지급기준일 : 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2. ~ 3.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. 1. 지급기준일 : 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2. ~ 3. 생략
제48조(수익자 고등)	① ~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.	① ~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① ~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제41조(이익분배)	① ~ ② 생략	① ~ ② 생략	① ~ ② 생략

2010.09.10	제41조(이익분배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. 1. 지급기준일 : 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3영업일. 다만, 신탁회계기간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신탁회계기간종료일로부터 제2영업일로 한다. 2. ~ 3. 생략 ② ~ ⑤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. 1. 지급기준일 :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2. ~ 3. 생략 ② ~ ⑤ 생략
제48조(수익자 고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정사무소에 게시하고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실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.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양도·양수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·양수 8.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9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정사무소에 게시하고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실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.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양도·양수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·양수 8.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9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	

	② ~ ③ 생략	
--	----------	--

**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**

- 해당사항없음

**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**

- 해당사항없음

**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**

- 해당사항없음

**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**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 회계법인	1년	330만 원	서면계약	-	-	-	-	-

**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**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**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**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